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멘트 소성로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별표3 개정, '23.3.31)됨에 따라, 「환경보건법」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·평가 대상 사업에 ‘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(생산능력)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’을 추가하여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·평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,

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(제2021-95호, 의결'21.2.22)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3. 7. 3. ~ 8. 14.) 예정  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 
- 규제 신설·강화 있음

##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)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(능력)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

별표 4 제1호나목 후단 중 “위반행위의 횟수는 같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, “행정처분을 한 날과”를 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”로, “적발한”을 “하여 적발된”으로, “하여 계산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62